

군산시 시보발행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10년 8월 31일

군산시 훈령 제 267호

군산시 시보발행규정 전부개정규정

군산시 시보발행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보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의 편집·제작·보급 및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군산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집·제작·보급은 공보담당관이 주관한다.

제3조(발행시기) ① 시보의 발행은 월 2회로 하고 매월 1일, 15일에 이를 발행한다. 단, 발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간 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편찬구분과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5. 고시
6. 공고
7. 예규
8. 인사
9. 휘보
10. 사업소, 읍·면·동

제5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사항을 실는다.

1. 법령에 의한 특허,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또는 그 취소 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2. 법령에 의하여 시보에 실도록 되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주요사업
4.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중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5.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신에 관한 사항과 소청심사 청구 보정명령 및 소청심사 기일 통지
6.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계획 및 통보
7. 기타 시보에 실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업소·읍면동란) 사업소, 읍·면·동란에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요구에 따라 실는다.

제7조(시보게재의 조정) 공보담당관은 예산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규, 고시, 공고, 휘보 중 법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시보게재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시보에 실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게재 절차) ① 각 관·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보 게재를 요하는 자료 오른쪽 상단에 "요시보 게재", 긴급을 요할 때는 "요시보 호외 발행"이라 쓰고 원안을 포함하여 3통을 10일, 25일까지 공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에 공포 또는 고시, 공고번호를

부여하고 시보 발행 예정 호수와 년월일을 기입하여 주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치법규공포대장, 고시공고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보발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보 배부기준) 시보는 관·과, 사업소, 읍·면·동, 경찰서, 교육청 기타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에 배부하되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기구, 시보의 사용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초에 결정한다.

제10조(유가 발행) 시보는 시에서 발행하는 것 외에 인쇄인이 시장이 지정한 가격으로 발행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보의 보관 등) ① 공보담당관은 시보 1부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보를 배부 받은 시 본청 및 소속 기관 읍·면·동은 시보 1부를 1년간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비치·보관이 필요한 기관·단체도 이에 준한다.

③ 제2항의 비치 활용 상황에 대하여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보의 효력) 시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규정은 2010년09월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치법규공포대장(고시·공고대장)

등재 년월일	공포 번호	공포 년월일	시보발행 호수/년월일	건명	주무과	참고 (근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시보발행대장

결재			발행 일자	발령 호수	발행 수량	목록	발행 의뢰 일자	납품 일자	배부 일자	참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8월 31일

군산시 훈령 제 268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일부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 이라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2조까지” 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기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을 “정기평정은 4월30일과 10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인이상 7인” 을 “5명 이상 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0일이내” 를 “10일 이내” 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②·③ (생략)

④평정위원회에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인사계장이 된다.

제17조(근무성적평정결과 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결정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명-----
-----.

제17조(근무성적평정결과 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
----- 10일 이
내-----

-----.

② (현행과 같음)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96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27.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38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면적(m ²)	면적(m ²)	
주 차 장	군산 시립묘지 주차장 (65)	21,826	21,818	
소 계		21,826	21,818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공영사업과)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0. 6. ~ 2013. 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주차장(㎡)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387	답	21,818	21,81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			
합 계				21,818	21,818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9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27.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구암동 32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구암동 장독마을 연계도로 개설	소로 2-794	8	171	8	171.0	1,479	
	소로 3-278	6	89	6	89.5	624	
소 계						2,103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당초 : 2009. 8. ~ 2010. 7. - 변경 : 2009. 8. ~ 2012. 7.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로2-794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구암동	327-2	도	53	6	최승조	군산시 구암동 369			
2	구암동	328-2	도	23	4	전북노회재단	전주읍 동정2정목 18			
3	구암동	327-1	대	615	39	최연봉	군산시 구암동 327-1			
4	구암동	328-4	대	109	109	김병호	군산시 구암동 328			
5	구암동	610	도	11,884	93	건설교통부				
6	구암동	328-3	대	694	43	김재형	군산시 조촌동903-1			
7	구암동	350	대	284	22	김민정	전주시 효자3가1461-8			
8	구암동	349-2	임	1,762	372	박노희 외 6인	군산시 경암동 641-1			
9	구암동	349-1	묘	1,431	220	박노희 외 6인	군산시 경암동 641-1			
10	구암동	343	대	228	10	고공식	군산시 구암동 344			
11	구암동	342	대	902	162	송춘례	군산시 구암동 342			
12	구암동	368-5	대	119	119	유태식	군산시 구암동 368			
13	구암동	368-2	대	132	2	전배호	군산시 구암동 638-2			
14	구암동	368-1	대	182	10	송주현 외 2인	이천 부발읍 아미리136-1			
15	구암동	369	대	420	176	이봉운	군산시 구암동 375			
16	구암동	370	대	185	35	채수창	인천 구월동 179-101			
17	구암동	371	대	388	57	최금산	군산시 구암동 371			
	합계				1,479					

소로3-27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5	구암동	610	도	11,884	354	건설교통부				
18	구암동	358-2	대	19,569	180	한국서부발전	서울시 삼성동167			
19	구암동	361-2	대	36	2	채수창	인천 구월동 179-101			
20	구암동	361-3	전	380	7	채용석 외 2인	인천 구월동 179-101			
21	구암동	361-5	도	46	4	김원식	군산시 구암동 361-1			
22	구암동	361-7	전	153	8	유영준	군산시 구암동 339			
23	구암동	361-1	대	422	7	심상규	군산시 구암동 384			
24	구암동	362-1	전	2,517	23	박남용	군산시 구암동 362-7			
25	구암동	362-8	전	3	3	박남용	군산시 구암동 362-7			
26	구암동	357-1	구	3,029	4	전북농조	이리시 평화동 56			
27	구암동	355-3	구	4,347	32	전북농조	이리시 평화동 56			
	합계				624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구암동	327-1	건물	스레트	11.6㎡	최연봉	구암동 327-1			
2		328-4	건물	함석	136.3㎡	김병호	구암동 328			
3		328-3	건물	스레트	112.2㎡	김재형	조촌동 903-1			
4		349-2	건물	스레트	78.0㎡	박노희외6인	경암동 641-1			
5		349-1	건물	스레트	36.0㎡	박노희외6인	경암동 641-1			
6		342	건물	스레트	42.0㎡	송춘례	구암동 342			
7		368-5	건물	스레트 함석	41.6㎡	유태식	구암동 368			
8		368-2	건물	함석	26.6㎡	전배호	구암동 638-2			
9		369	건물	스레트	45.5㎡	이봉운	구암동 375			
10		369	건물	스레트	126.8㎡	이봉운	구암동 375			
11		370	건물	스레트	7.6㎡	채수창	인천시 구월동 179-101			
12		371	건물	스레트	90.3㎡	최금산	구암동 371			
13		361-3	건물	스레트 기와	87.0㎡	채용석외2인	인천시 구월동 179-101			
14		361-7	건물	스레트 슬래브	20.0㎡	유영준	구암동 339			
15			나무	은행나무	1주					
16			나무	감나무	5주					
17			나무	탱자나무	60주					
15			나무	가이즈까	3주					
16			나무	옥향	3주					
17			나무	소나무	2주					
18			한전주		4주					
19			체신주		4주					
20			가로등		2본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98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27.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미룡동 450-7번지 오복마트주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연계도로 개설	소로 2-657	8	109	8	109	1,692	
	소로 1-269	10	129	10	129	1,036	
	소로 2-658	8	127	8	127	822	
소 계						3,550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당초 : 2009. 8. ~ 2010. 7. - 변경 : 2009. 8. ~ 2011. 7.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로2-657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미룡동	456-3	전	104	4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			
2	"	447-2	답	160	11	"	"			
3	"	452-2	답	15	15	"	"			
4	"	455-6	전	1	1	"	"			
5	"	455-5	전	319	97	"	"			
6	"	452-3	답	95	95	"	"			
7	"	452-5	전	786	756	"	"			
8	"	451-1	전	210	199	"	"			
9	"	450-7	전	446	443	"	"			
10	"	450-6	도	63	16	"	"			
11	"	450-3	전	20	18	"	"			
12	"	450-5	도	59	8	"	"			
합계				2,278	1,702					

소로1-269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3	미룡동	453-3	전	373	37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			
14	"	453-12	도	62	62	"	"			
15	"	416-21	도	107	107	군산시외3인	"			
16	"	416-15	도	301	301	군산시	"			
17	"	416-18	대	82	82	군산시외1인	"			
18	"	416-11	도	111	111	유영준	군산시 구암동 339			
합계				1,036	1,036					

소로2-65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9	미룡동	452-9	전	78	78	고성자외2인	월명동 140-21			
20	"	417-1	전	373	10	이덕례	군산시 나운동 740-11			
21	"	453-5	답	269	269	김환기	군산시 미룡동 453-1			
22	"	416-23	답	334	334	재단법인천주 교전주교구유 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23	"	416-12	답	131	131	박종예순외3인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합계				1,185	822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미룡동	416-21	콘테이너		27㎡	김대근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2	"	453-5	"		18㎡	김환기	군산시 미룡동 453-1			
3	"	450-7 451-1	"		150㎡	노동수	경기 화성 마도면 백공리 741-2			
4	"	451-1	감나무	R=15	1주	이인수	군산시 미룡동 450-2			
			대추나무	R=10	2주	"	"			
5	"	417-1	병나무	R=30	1주	"	"			
6	"	416-23	철조망		8m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단풍나무	R=15	1주	"	"			
			"	R=5	1주	"	"			
7	"	416-23	출입문		5m	"	"			
			웬스	EGI	3m	"	"			
8	"	416-12	천막		0.3㎡	박종예순외 3인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군산시 고시 제2010 - 99호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 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 .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군산 상고	군산시 문화동 785-3번지일원	32,110	+1,087	33,197	전북고66 (90.4.18)	학교부지 면적증가

2.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 내용

군산상고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	문화동 598-2	학	78	-	-78	전라북도 교육감	795-2번지와 합병
2	문화동 598-3	학	68	-	-68	"	795-2번지와 합병
3	문화동 737-1	학	10,365	10,965	+600	"	748-13편입
4	문화동 748-13	학	908	-	-908	"	737-1번지와 합병
5	문화동 785-3	학	18,047	18,026	-21	"	지적분할에 따른면적착오
6	문화동 795-2	학	1,832	1,980	+148	"	지적분할에 따른면적착오
7	문화동 854-7	학	284	283	-1	"	지적분할에 따른면적착오
8	문화동 854-9	학	528	534	+6	"	지적분할에 따른면적착오
9	문화동 740	전	-	119	+119	"	교실증축에 따른면적편입
10	문화동 741	대	-	221	+221	"	교실증축에 따른면적편입
11	문화동 742	대	-	175	+175	"	교실증축에 따른면적편입
12	문화동 747-1	임	-	894	+894	"	교실증축에 따른면적편입
계			32,110	33,197	1,087		

3.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100호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3.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면적	비 고
학교	군산제일 중.고등학교	57,496㎡	56,789㎡	
소 계		57,496㎡	56,789㎡	

3.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개정동 413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학교법인 경암학원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0. 9. ~ 2010.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조촌동	84	학	62,241	46,376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2		84-4	답	149	109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3		84-5	대	198	67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4		84-6	전	397	87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5		84-23	임	207	207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6		89-3	전	450	383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7		89-8	학	2,307	2,307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9		90-13	학	2,159	2,159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10		90-14	임	92	92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12		565-8	학	257	257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14		산55-2	임	2,235	1,195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15		산59-18	임	33,798	3,520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16		산64	임	298	30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	-	-		
계			16필지		104,788	56,789						

군 산 시 공 고 제 2010-13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전라북도 고시 제2007-294(2007.11.15)호로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되어 보상시행 중인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의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협의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전북 군산시 내흥동, 성덕면 성덕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군산시 공동시행)

주소 :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175

라. 사업기간 : 2007. 11 ~ 2013. 6

(문의 ☎ 063)450-4446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공시송달 공고 내역 : “붙임”참조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군산시 공고 제2010-1379호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시민건강의 보호·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대형병원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형병원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병원유치와 부지조성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조정 기능 (안 제3조)
- 나.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함 (안 제4조)
- 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안 제11조)
- 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350/ 군산시 하나운로 17번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 063-460-3234, FAX : 063-463-147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이재희 (063-460-32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시민건강의 보호·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대형병원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형병원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대형병원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가. 부지지정 승인 등에 대한 지원
 - 나. 대형병원유치 인센티브 방안 및 법률적 정비
2. 대형병원유치와 부지조성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조정
3. 대형병원 개발사업 추진 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및 병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사업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10-3호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9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조정이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동결하였던 처리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35% 인상 (제2조 제1항 1호 별표7)

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약표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280원	150원	1,430원

주) 추가요금은 10ℓ 당 150원으로 한다

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약표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까지)	16,730원	1,500원	18,230원
초과요금 (0.1㎡마다)	1,210원	150원	1,360원

주) 0.1㎡미만은 0.1㎡으로 본다

3. 의견제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하수과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지, 전화 450-4336, FAX 450-443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450-4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7(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 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p>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약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부과기준</th> <th colspan="3">수 수 료</th> </tr> <tr> <th>수집·운반</th> <th>처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00리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95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60원</td> </tr> </tbody> </table> <p>주) 추가요금은 10ℓ 당 110원으로 한다</p> <p>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약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부과기준</th> <th colspan="3">수 수 료</th> </tr> <tr> <th>수집·운반</th> <th>처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요금 (1.0㎡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12,4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3,500원</td> </tr> <tr> <td>초과요금 (0.1㎡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0원</td> </tr> </tbody> </table> <p>주) 0.1㎡미만은 0.1㎡으로 본다</p>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950원	110원	1,060원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까지)	12,400원	1,100원	13,500원	초과요금 (0.1㎡마다)	900원	110원	1,010원	<p>별표7(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과 같음) ○ (원안과 같음) <p>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약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부과기준</th> <th colspan="3">수 수 료</th> </tr> <tr> <th>수집·운반</th> <th>처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00리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u>1,28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5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430원</u></td> </tr> </tbody> </table> <p>주) 추가요금은 10ℓ 당 <u>150원</u>으로 한다</p> <p>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약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부과기준</th> <th colspan="3">수 수 료</th> </tr> <tr> <th>수집·운반</th> <th>처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요금 (1.0㎡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u>16,73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50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8,230원</u></td> </tr> <tr> <td>초과요금 (0.1㎡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u>1,21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5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360원</u></td> </tr> </tbody> </table> <p>주) 0.1㎡미만은 0.1㎡으로 본다</p>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u>1,280원</u>	<u>150원</u>	<u>1,430원</u>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까지)	<u>16,730원</u>	<u>1,500원</u>	<u>18,230원</u>	초과요금 (0.1㎡마다)	<u>1,210원</u>	<u>150원</u>	<u>1,360원</u>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950원	110원	1,060원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까지)	12,400원	1,100원	13,500원																																																		
초과요금 (0.1㎡마다)	900원	110원	1,010원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u>1,280원</u>	<u>150원</u>	<u>1,430원</u>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까지)	<u>16,730원</u>	<u>1,500원</u>	<u>18,230원</u>																																																		
초과요금 (0.1㎡마다)	<u>1,210원</u>	<u>150원</u>	<u>1,360원</u>																																																		

국방부 고시 제 2010 - 35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지정, 변경,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변경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지정, 해제, 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1. 지역 · 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적(m ²)
제한보호구역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일대	1,287,835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관계 지형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